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5일, 서천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사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3.19.)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천호 의원)

현행법은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군수

· 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함)은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을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되, 어촌계 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 등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임대차의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양식업권 취득 및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식산업발전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시 양식업권 및 어업권과 관련한 제도 운영상의 형평성·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이에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32조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1.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 권리 보장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법률상 금지되는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개정).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u>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u>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u>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u> ----- -----.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u>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거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u>	제32조(임대차의 금지) ----- -----. <후단 삭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생략)

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③ (생략)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

1.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
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
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7조 또는 제8조-----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
수협-----

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u>지구별수협</u>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 ----- ----- ----- ----- ----- -----<u>지구별수협</u>이나 <u>업종별수협</u>-----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 「수산업법」 제7조는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이러한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어업권’으로 정의하고 있음¹⁾.

1) 헌법재판소는 어업면허에 대하여 “어업면허는 일정한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일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른바 특허)로서, 면허를 받은 자는 수면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그 수면·수중·수저에 있는 어업권의 객체를 포획·채취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과 동시에 특정수역을 배타적·입체적으로 이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헌재 2019. 7. 25. 선고 2017헌바133 공보

- 마을어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해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뜻하고,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 장소에 설치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뜻함²⁾.

[표] 정치망어업 면허현황(2023년)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수	475	1	-	5	-	82	7	14	41	78	197	50

자료: 해양수산부

- 현행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은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에게만 면허할 수 있고,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게 마을어업 외의 어업, 즉 정치망어업을 면허할 수 있음.

이러한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不在地主)의 지위에서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에 따른 것임³⁾.

2) 정치망어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1] 참조

3) 대법원은 어업권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어촌계가 그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 명의로 취득한 어업권의 일부를 행사케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임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어업권의 임대차의 실질을 갖는 것”이고, “수산업법이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적격성과 우선순위 등의 판단을 거쳐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해당 수면을 구획·전용하여 어업을 경영케 하고 그 이익을 제3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 아래 마련된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함과 아울러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 다만, 제32조 후단은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어업권을 보유한 어촌계·지구별수협 구성원의 어업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별수협이 아닌 업종별수협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없어, 업종별수협이 어업권(정치망어업 면허)을 보유하더라도 그 조합원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음.

- 현재 업종별수협 중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을 업종으로 하는 곳으로는 전남정치망수협과 경남정치망수협이 있음.

관련 「수산업법」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른바 부채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2458 판결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채취방법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 이에 개정안은 업종별수협이 보유한 어업권을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행사토록 하는 경우 이를 법률상 금지되는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지구별수협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식업권과 관련하여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양식업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양식산업발전법」)와의 법적 균형성 및 제도 운영상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국회는 2023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⁴⁾하여 업종별수협의 구성원이 수협이 보유한 양식업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법에서 금지하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도록 변경한 바 있음.

4) 법률 제19691호, 2023. 8. 16, 일부개정

□ 다만, 현재 모든 정치망어업 면허는 개별 어업인이나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및 지구별수협에 대해서만 부여되어 있고 업종별수협에서 정치망어업 면허를 보유한 사례는 없으며⁵⁾ 현재 신규 면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업종별수협이 매수, 경매입찰 등의 방식으로 어업권을 취득한 후 조합원에게 이를 행사토록 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현행법 제8조제2항⁶⁾을 근거로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 밖에 해양수산부는 시행일과 관련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현재의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수 있겠음.

5) 정치망어업과 관련하여 두 곳의 업종별수협(전남정치망수협, 경남정치망수협)이 조직되어 있으나, 해당 수협의 경우 조합 자체적으로 정치망면허를 취득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정치망면허를 가진 어업인들이 모여서 업종별수협을 구성한 경우에 해당함.

6)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업종별수협이 원활한 어업권 보장 및 행사를 위해 정치망어업 면허 대상에 업종별수협을 추가하는 등 수정의결함.

7. 수정안의 요지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및 체계를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면허어업 대상에 업종별수협을 추가하고, 업종별수협의 어업권 보장 및 행사 등을 위해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및 유어장 지정·운영 규정에 업종별수협을 추가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분할할 수 있다.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2.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3.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업종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4.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안 제21조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를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지구별수협”을 각각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u>지구별수협</u> 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현행과 같음)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u>지구별수협</u> 또는 <u>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u> (이하 “ <u>업종별수협</u> ”이라 한다)-- -----

제19조(어업권의 이
전·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
다.

1. 「어장관리법」
에 따른 어장정
화·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어업권(마을어업
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
을 시작한 날(시
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
다)부터 1년이 지
난 후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
가를 받은 경우
3. 법인의 합병 또
는 상속으로 이

제19조(어업권의 이
전·분할 또는 변경)

(현행과 같음)

제19조(어업권의 이
전·분할 또는 변경)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
음)

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어업권이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② (현행과 같음)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u>사이에 서로 이전 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 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u>		<u>전·분할할 수 있 다.</u>
		1. <u>어촌계와 어촌 계 사이에 어업권 을 이전·분할하 려는 경우</u> 2. <u>어촌계와 지구 별수협 또는 업 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 분할하려는 경우</u> 3. <u>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업종별수협 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분할하려 는 경우</u> 4. <u>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 에 어업권을 이 전·분할하려는 경우</u>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u>어 촌계나 지구별수협이</u>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u>어 촌계나 지구별수협</u>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 -----

[illegible]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분할할 수 있다.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2.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3.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업종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4.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분할하려는 경우

제21조 중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2조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1.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6조제2항 중 “지구별수협”을 각각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8조”를 “제7조 또는 제8조”로,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8조 중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항 중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을 각각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u>영어조합법인</u> 또는 <u>지구별수협</u> 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영어조합법인</u> , <u>지구별수협</u> 또는 <u>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u> (이하 “ <u>업종별수협</u> ”이라 한다)----- -----.
제19조(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 · ② (생략) ③ <u>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u>	제19조(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이전·분할할 수 있다.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에 어

<u>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u>	<u>업권을 이전·분할하려는 경우</u>
	2. <u>어촌계와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분할하려는 경우</u>
	3. <u>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업종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분할하려는 경우</u>
	4. <u>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사이에 어업권을 이전·분할하려는 경우</u>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u>지구별수협</u> 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 <u>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u> ----- ----- --.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u>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u>	제32조(임대차의 금지) ----- ----- . <u><후단 삭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u>

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입
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생 략)

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
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
사한다.

③ (생 략)

1.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
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
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
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
을 행사하는 경우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 수협-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7조 또는 제8조-----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

-----지구별수협이나 업종별수협-----

-----.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